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0일 김광성 의원이 발의하고, 2023년 1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수도 요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하고, 수급자, 장애인 세대 등 요금 감면 사유를 추가 신설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량 과다, 미납 등의 원인으로 인한 과다요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(안 제28조제4항)

나. 수도사용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써 정수처분 후 수도 공급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징수 폐지(안 제33조제5호)

다.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위기 발령하는 때, 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모범업소 등을 요금감면 사유로 신설추가(안 제35조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군민의 과다사용, 누수 등에 따른 수도 요금에 대하여

일정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과

요금감면 대상에 **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을**

추가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,

○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군민의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검토 결과,

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